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93
------------	------

발의연월일 : 2017. 1. 25.

발 의 자 : 이채익 · 곽대훈 · 여상규  
홍문종 · 정갑윤 · 정운천  
염동열 · 최연혜 · 김도읍  
윤영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 중복되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리한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발전소 설치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에 따른 지원 또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이에 중복 대상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송전선로와 발전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

조제2항 삭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략)</p> <p>②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③ (현행과 같음)</p>